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-90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11. 1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,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 따라 우리구청 주소(소재지)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종전의 구청 새주소 “난지도길 30”을 “월드컵로 212(성산동)”로 변경
-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

3. 개정근거

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,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

4. 개정조례안 : 따로 붙임

5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1. 10. 13. ~ 2011. 11. 02.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검토 대상 아님

다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1.11.10) : 원안의결

붙임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난지도길 30(성산동 370)”을 “월드컵로 212(성산동)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위치)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<u>난지도길 30(성산동 370)</u>에 둔다.</p>	<p>제2조(위치) ----- ----- <u>월드컵로 212(성산동)</u>-----.</p>